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22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나92299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214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민오기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9. 20. 선고 2023가단1214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경기도 양평군 D 대 389㎡에 관하여 2022. 8.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2. 8. 3. 접수 제352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변제자 대위를 통해 행사할 수 있었던 신용보증기금의 경매신청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대신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할 당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한 자가 없었고 달리 우선변제를 받을 자도 없었으므로 매각대금 전액에서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우선변제의 측면에서 보면 근저당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취득행위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변제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승계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한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구상금채권자에 불과하고,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신용보증기금의 지위를 변제자 대위를 통해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안동철, 판사 이효진